

대학원 학·연·산 협동과정 내규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계명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.)와 협력관계에 있는 연구기관(이하“협약기관”이라 한다.) 간에 체결한 연구 및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에 의거 각 분야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우리 대학교 대학원 학·연·산 협동과정(이하 “협동과정”이라 한다.)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학위과정) 협동과정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.

제3조(위원회) ① 협동과정의 학사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학·연·산 협동과정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고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조(학사운영) 우리 대학교 「대학원 학칙」을 따르되,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(학과 및 정원) 협동과정에 설치하는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학과는 본 협동과정을 위한 협약기관과의 협약서에 명시된 분야와 관련되는 학과로 한다.

제6조(입학) 입학 및 전형절차는 「대학원 학칙」을 따른다.

제7조(교육과정의 운영) ① 교육과정의 운영은 「대학원 학칙」을 따르되, 대학원 교육과정 중에서 기초 및 전공과목은 대학원이 담당하고 전문분야의 전공은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협약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다.

② 학위논문에 필요한 실험실습 및 연구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관이 담당한다.

제8조(인력교류) ① 인력교류는 협동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 기관의 관계규정과 협약서에 따라 협동과정에 참여하는 협약기관의 연구원을 우리 대학교의 객원교수로, 우리 대학교의 교원을 협약기관의 위촉연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② 객원교수와 위촉연구원에게는 양 기관의 관계규정과 협약서에 따라 수당 또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학위청구논문 및 학위수여) ① 학위청구논문의 지도는 대학원과 협약기관에서 각 1명씩 지도교수를 선임하는 공동지도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학위청구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「대학원 학칙」을 따른다.

제10조(위원회의 운영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과, 학생정원 및 입학에 관한 사항
2. 학위청구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3.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4. 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타 제반사항

제11조(대학원위원회 상정) 위원회에서 심의된 중요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.

부칙

이 내규는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※ 본 내규는 소관부서의 내부결재와 소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하기 이력과 같이 자체적으로 제정 및 관리하였던 내규이나, 「규정류 관리 규정」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자 기획위원회 및 교무회의 심의를 통하여 위 시행일에 '규정류'로 제정되었음

<과거 개정 이력 및 부칙>

1. 이 내규는 1997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내규는 1999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개정내규는 200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개정내규는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